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운영과 위원
의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다.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

- 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함.(안 제10조)
- 라.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공동주택 내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와 운영권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한 보육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 보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내 어린이집 배치비율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의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 관련조문 : 조례(안) 제15조(설치비용의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비용 및 인건비 지원
 - 우리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20% 보장('21년까지)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임
 - 향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40%(대선 공약) 실행 계획에 따라 목표 상향 조정(이용률 40%)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용 증가할 수 있음
- ※ 인천광역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17~2021) : 300개소 확충 이용률 20%('21년까지 +150개소)

나. 추계 결과

- 총소요액 : 87,828,794천원
- 산출기초 : 붙임 1

다. 재원조달방안

- 시 설 비
 - 신축, 매입 : 국비최대 지원 5억, 차액 지방비 분담(시비 70% 군·구비 30%)
 - 설치, 전환 : 국비최대 지원 1.1억, 차액 지방비 분담(시비 70% 군·구비 30%)
 - 인 건 비 : 국비 60% 시비 28% 군·구비 12%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2

4. 작성자

비용 추계결과 산출기초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년도 구분		총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2016년 150개소)		300	165	195	225	260
		150	15	30	30	30
재원별예산	소요예산	59,100,000	1,700,000	13,600,000	13,600,000	14,600,000
	국비	26,620,000	850,000	6,030,000	6,030,000	6,580,000
	시비	22,566,000	425,000	5,299,000	5,299,000	5,614,000
	군·구비	9,914,000	425,000	2,271,000	2,271,000	2,406,000
보육아동		8,700	870	1,740	1,740	2,030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이용 아동 81,096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8,610, 이용률 10.7%(2016.12월)

2021년까지 150개 확충 : 150개소×58명 = 8,700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17,310, 이용률 21.4%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구분 (재원별)	총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설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시설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시설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시설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시설수	보육 교직원
계	150	1,650	28,728,794	15	165	2,676,717	30	330	5,514,036	30	330	5,679,455	35	385

<비용산출근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 2017년: 예산기준 적용, 2018년~ : 국공립 설치유형별 국비 최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 * 국공립 설치유형별 기초 단가 상이 적용
 - 신축(부지매입제외) : 1개소 × 15억, 국비 최대지원 5억, 국비지원 차액은 지방비 분담(시비 70%)
 - 설치(공공기관) : 1개소 × 2억, 국비 최대지원 1.1억, 국비지원 차액은 지방비 분담(시비 70%)
 - 전환(공동주택) : 1개소 × 2억, 국비 최대지원 1.1억, 국비지원 차액은 지방비 분담(시비 70%)
 - 매입(민간시설) : 1개소 × 12억, 국비 최대지원 5억, 국비지원 차액은 지방비 분담(시비 70%)

보육교사 인건비 : 국비 60% 시비 28%, 군구비 12%

- * 보육교직원수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수(2017년 6월말 기준)
 - 154개소/ 1,337명 ≒ 11명/ 개소
- * 연봉액 : 16,222,530원/1인(2017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원장 154명/ 평균 호봉 14호봉(80%), 보육교사 11명/ 평균호봉 5호봉(30%~80%), 조리사 150명/ 평균호봉 14호봉(80%)
 - 보육교직원수/보육교직원 수 * 평균호봉 * 지원율(30%~100%) ≒ 16,222,530

교직원	인원	평균연봉	평균연봉(100%)	평균연봉(80%)	평균연봉(30%)	호봉
계	1,337	16,222,537				21,680
원장	154	34,964,400		27,971,520		4,307
보육교사	313	21,945,600			6,583,680	2,060
	720	21,945,600		17,556,480		12,640
조리사	150	17,870,400	17,870,400			2,680

* 미지원 교직원수 : 468명(간호사,영양사,운전기사등), 보조교사, 대체교사등은 별도 사업비로

- * 연도별 인건비 추계(1인 연봉)

구분	교직원수/개소	평균연봉 (1인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보육교직원	11/1	16,222,530	16,222,530	16,709,200	17,210,470

* 2017년 인건비 지원기준 : 원단위 절사, 매년 인건비 인상분 3% 반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분		용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일반회계	설치비	850,000	6,030,000	6,030,000	6,580,000	7,130,000	26,620,000
		인건비	1,606,030	3,308,422	3,407,673	4,094,886	4,820,265	17,237,276
	소계		2,456,030	9,338,422	9,437,673	10,674,886	11,950,265	43,857,276
세출	일반회계	설치비	1,700,000	13,600,000	13,600,000	14,600,000	15,600,000	59,100,000
		인건비	2,676,718	5,514,036	5,679,455	6,824,810	8,033,775	28,728,794
	소계		4,376,717	19,114,036	19,279,455	21,424,810	23,633,775	87,828,794
재원조달		설치비 : 국비 최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시비70%, 군·구비 30%) → 신축, 매입 : 국비 최대 5억 지원, → 설치, 전환 : 국비 최대 1.1억 지원, 인건비 : 국비60%, 시비28%, 군·구비12%						
국비		설치비	850,000	6,030,000	6,030,000	6,580,000	7,130,000	26,620,000
		인건비	1,606,031	3,308,422	3,407,673	4,094,886	4,820,265	17,237,277
시비	소계		1,174,481	6,842,930	6,889,247	7,524,947	8,178,457	30,610,062
	일반회계	설치비	425,000	5,299,000	5,299,000	5,614,000	5,929,000	22,566,000
		인건비	749,481	1,543,930	1,590,247	1,910,947	2,249,457	8,044,062
	특별회계							
	기금							
군·구비		소 계	746,206	2,932,684	2,952,535	3,224,977	3,505,053	13,361,455
		설치비	425,000	2,271,000	2,271,000	2,406,000	2,541,000	9,914,000
		인건비	321,206	661,684	681,535	818,977	964,053	3,447,455
민 간								
기 타								